반찬가게 창업 · 운영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반찬가게 창업 · 운영]

맞벌이 부부, 노령인구 및 독신남녀의 증가 등으로 매일 먹는 반찬을 간편하고 다양하게 즐길 수 있는 반찬가게 이용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소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는 반찬가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에 이 콘텐츠에서는 반찬가게 영업 중 일반적 형태인 '즉석판매제조 · 가공업'을 중심으로 반찬가게 창업 · 운영에 필요한 사전준비, 영업시설, 영업신고 및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제공합니다.

반찬가게 창업 · 운영 1
1. 반찬가게 영업의 이해 4
1.1. 반찬가게 영업의 개념 4
1.1.1. 반찬가게 영업의 종류와 범위 4
1.1.2. 즉석판매제조 · 가공 대상 식품 4
2. 사전준비 6
2.1. 입지선정 6
2.1.1.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6
2.2. 점포계약 및 영업시설 8
2.2.1. 점포계약 및 가맹점 계약 시 주의사항 8
2.2.2. 반찬가게 영업시설 11
2.2.3.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13
2.3. 창업지원 19
2.3.1.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등 19
3. 영업신고 등 21
3.1.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21
3.1.1. 영업신고 21
3.1.2.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22
3.2.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24
3.2.1. 영업자 등의 건강진단 24
3.2.2. 식품위생교육 25
3.3. 세금 28
3.3.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 28
4. 준수사항 29
4.1. 영업자의 준수사항 29
4.1.1. 반찬가게 운영시 준수사항 29
4.1.2. 식품 등의 표시 기준 30
4.2.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35
4.2.1. 위생적 취급기준 35
4.2.2. 금지행위 및 처벌 37
4.2.3. 위해식품 등의 회수 40
4.3. 식품위생검사 43
4.3.1.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등 43
4.4. 원산지 표시의무 47
4.4.1.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47
5. 변경 · 폐업 등 56
5.1. 영업변경 · 폐업 및 영업승계 56
5.1.1. 영업변경 및 폐업 신고 56
5.1.2. 영업승계의 신고 57

1. 반찬가게 영업의 이해

1.1. 반찬가게 영업의 개념

1.1.1. 반찬가게 영업의 종류와 범위

영업의 종류와 범위

반찬가게 영업은 일반적으로 「식품위생법」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에 해당합니다.

▪ 반찬가게와 관련된 영업의 세부 종류와 그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제2호, 제5호가목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 식품제조·가공업: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에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업소에서 직접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영업
- 식품소분업: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8조제1항에서 정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할 목적으로 재포장·판매하는 영업

※ 이 콘텐츠에서는 반찬가게의 일반적 형태인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중심으로 반찬가게의 창업·운영에 필요한 사전준비, 영업시설, 영업신고, 영업자 준수사항 등에 관한 법령정보를 소개합니다.

영업의 구분
Q. 우리 동네 마트 내에서 반찬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어떤 영업에 해당하나요? 만약 인터넷판매와 같이 유통이 가능한 영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어떤 영업인가요? A. 일반적으로 시장이나 백화점·마트 내의 반찬가게와 같이 가게에서 직접 제조·가공하여 소비자에게 바로 판매하는 경우에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하고(「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인터넷판매와 같이 유통이 가능한 영업은 '식품제조·가공업'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 또한 직접 제조·가공하지 않고 이미 만들어진 반찬을 다른 용기에 나누어 담아 재포장해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식품소분업'에 해당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5호).

1.1.2. 즉석판매제조 · 가공 대상 식품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대상 식품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으로 제조·가공할 수 있는 대상 식품은 다음의 식품입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2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7조 및 별표 15).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1호에 따른 식품제조·가공업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에서 제조·가공할 수 있는 식품에 해당하는 모든 식품(통·병조림 식품은 제외함)
- 식품제조·가공업의 영업자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으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내에서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직접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식품.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은 제외합니다.

가. 통·병조림 제품

나. 레토르트식품

다. 냉동식품

라. 어육제품

마. 특수용도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은 제외함)

바. 식초

사. 전분

아. 알가공품

자. 유가공품

2. 사전준비

2.1. 입지선정

2.1.1.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 허용여부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시설 허용여부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시설 허용여부

▪ 용도지역 별 반찬가게시설 허용여부는 다음 표와 같습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 별표 2부터 별표 22까지 및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 "용도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건축법」 제55조의 건폐율을 말함), 용적률(「건축법」 제56조의 용적률을 말함) 및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의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5호).

(O : 허용, X : 불허, ▲ : 도시계획조례에서 허용)

업종	주거지역						상업지역			
	전용		일반			준	중심	일반	근린	유통
	제1종	제2종	제1종	제2종	제3종					
1종 즉석	O (1천㎡ 미만)	O (1천㎡ 미만)	O	O	O	O	O	O	O	O
판매 즉석	X	X	▲ (2천㎡ 미만)	▲ (2천㎡ 미만)	▲ (2천㎡ 미만)	▲	O	O	O (3천㎡ 미만) ▲ (3천㎡ 이상)	O

업종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
	전용	일반	준	보전	생산	자연	보전	생산	계획		
1종 즉석	O	O	O	▲(500㎡ 미만)	O	O	▲	O	O	▲	▲
판매 즉석	X	X	▲	X	X	X	X	X	O(3천㎡ 미만)	X	X

<약어표>

1. “1종 즉석” → 제1종 근린생활시설인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

2. “판매 즉석” → 판매시설인 즉석판매제조·가공시설

※ 반찬가게를 창업·운영하기 위한 용도지역, 용도지구, 용도구역 확인 등은 토지이음 홈페이지(http://www.eum.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권조사
Q. 반찬가게를 할 만한 곳을 알아보는 중인데, 주변상권을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A. 『상권정보(https://sg.sbiz.or.kr)』에서는 각 지역 또는 주소를 입력하여 반찬가게 현황, 인근지역 상권정보 등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는 지역 상권분석 등에 대한 창업경영전문가들의 상담을 지원(대표전화 : 1357)하고 있습니다.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

용도변경

▪ 건축물(시설)의 용도변경은 변경하려는 용도의 건축기준에 맞게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1항).

※ “용도변경”이란 건축물(시설)의 안전·기능 및 미관의 향상이라는 「건축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건축물의 종류를 유사한 구조·이용목적 및 형태별로 묶어 분류해 놓은 것을 당초와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2. 18. 선고 2004도7807 판결).

용도변경허가·신고 대상

▪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상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1호 및 제4항).

※ 예를 들어, 반찬가게 창업·운영을 하기 위해 기존의 ‘주거업무시설군의 업무시설’을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변경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이 해당시설을 하위시설군에 해당하는 용도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건축법」 제19조제2항제2호 및 제4항).

※ 예를 들어, 반찬가게 창업·운영을 하기 위해 기존의 '교육 및 복지시설군의 수련시설'을 '근린생활시설군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를 변경하려면 용도변경신고를 해야 합니다.

건축물대장변경신청

▪ 같은 시설군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려는 사람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대장변경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건축법」 제19조제3항 및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제4항).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건축물 상호 간의 용도변경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용도제한에 적합한 범위에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 상호 간의 용도변경

2.2. 점포계약 및 영업시설

2.2.1. 점포계약 및 가맹점 계약 시 주의사항

점포계약

"임대차계약"이란?

▪ "임대차계약"이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임차인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합니다(「민법」 제618조).

▪ 상가건물(「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을 말함) 중 다음의 보증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임대차(임대차 목적물의 주된 부분을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 및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서울특별시 : 9억원
-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 5억 4천만원
-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 ※ 위 보증금액은 2019년 4월 2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됩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부칙(대통령령 제29671호, 2019. 4. 2.) 제2조].

임대차 기간 및 대항력

▪ 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상가건물 임대차는 그 기간을 1년으로 봅니다. 다만,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1항).

▪ 임대차가 종료한 경우에도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을 때까지는 임대차 관계는 존속하는 것으로 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9조제2항).

▪ 상가건물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건물의 인도와 「부가가치세법」 제8조,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깁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 상가건물 임대차계약 체결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 계약

"가맹사업"이란?

▪ "가맹사업"이란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자기의 상표·서비스표·상호·간판 그 밖의 영업표지를 사용하여 일정한 품질기준이나 영업방식에 따라 상품(원재료 및 부재료 포함) 또는 용역을 판매하도록 함과 아울러 이에 따른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과 통제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영업표지의 사용과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교육의 대가로 가맹본부에 가맹금을 지급하는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말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

※ 이를 위반하여 허위·과장의 정보제공행위나 기만적인 정보제공 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1조제1항).

▪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 가맹희망자의 예상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가맹점사업자의 매출액·수익·매출총이익·순이익 등 과거의 수익상황이나 장래의 예상수익상황에 관한 정보

※ 이를 위반하여 정보를 서면으로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2호).

▪ 가맹본부는 위의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정보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를 가맹본부의 사무소에 비치해야 하며, 영업시간 중에 언제든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그 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및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에 사용된 사실적인 근거와 예측에 관한 자료
-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의 산출근거가 되는 다음의 자료

① 산출근거가 되는 가맹사업의 점포(직영점과 가맹점을 포함)의 수

② 해당 가맹사업의 전체 점포 수 대비 ①에 따른 점포의 수

③ ①에 따른 각 점포와 점포예정지와의 거리

▹ 최근의 일정기간 동안에 가맹본부나 가맹중개인이 표시 또는 설명하는 현재수익 또는 예상수익과 같은 수준의 수익을 올리는 가맹점사업자의 수와 그 비율(이 경우 최근의 일정기간에 대해 시작하는 날짜와 끝나는 날짜를 표시해야 함)

※ 이를 위반하여 근거자료를 비치하지 않거나 자료요구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3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는 가맹계약을 체결할 때 가맹희망자에게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에서 영업개시일부터 1년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액의 최저액과 최고액으로 획정된 범위(이 경우 그 매출액의 최고액은 그 매출액의 최저액의 1.7배를 초과해서는 안 됨) 및 그 산출 근거를 서면(이하 “예상매출액 산정서”라 함)으로 제공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5항,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3항 및 제5항).

▹ 중소기업자(「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자를 말함)가 아닌 가맹본부

▹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가맹본부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가맹본부가 복수의 영업표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동일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사업자에 한정함)의 수가 100개 이상인 가맹본부

※ 가맹본부는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상매출액 산정서의 표준양식을 정하여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6항 및 제7항).

※ 이를 위반하여 예상매출액 산정서를 제공하지 않거나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3조제6항제4호 및 제5호).

가맹금의 반환

▪ 가맹본부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사항이 적힌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 또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 또는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경우로서 가맹희망자가 가맹계약 체결 전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허위·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을 위반한 경우로서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나 중요사항의 누락된 내용이 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인정되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의 체결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하고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가맹사업의 중단일부터 4개월 이내에 가맹금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 반환하는 가맹금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가맹계약의 체결경위, 금전이나 그 밖에 지급된 대가의 성격, 가맹계약기간, 계약이행기간, 가맹사업당사자의 귀책정도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 가맹점 계약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프랜차이즈(가맹계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2. 반찬가게 영업시설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기준

건물의 위치·구조 및 자재(「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2호가목)

▪ 독립된 식품의 제조시설과 원료 및 제품의 보관시설 등이 설비된 건축물(이하 "건물"이라 함)이거나 즉석판매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 또는 구획되어야 합니다. 다만, 백화점 등 식품을 전문으로 취급하는 일정장소(식당가·식품매장 등을 말함) 또는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영업장과 직접 접한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이용하여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일반판매업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로서 식품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건물의 위치 등은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가목).

▹ 건물의 위치는 축산폐수·화학물질 그 밖에 오염물질의 발생시설로부터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 건물의 구조는 제조하려는 식품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온도가 유지될 수 있고, 환기가 잘 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물의 자재는 식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고 식품을 오염시키지 않는 것이어야 합니다.

작업장(「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2호나목)

▪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는 기계·기구류 등이 설치된 제조·가공실을 두어야 합니다. 다만,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가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가 수입·판매한 식품을 소비자가 원하는 만큼 덜어서 판매하는 것만 하고, 식품의 제조·가공은 하지 않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제조·가공실을 두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제조가공실의 시설 등은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나목).

▹ 작업장은 독립된 건물이거나 식품제조·가공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시설과 분리(별도의 방을 분리함에 있어 벽이나 층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되어야 합니다.

▹ 작업장은 원료처리실·제조가공실·포장실 및 그 밖에 식품의 제조·가공에 필요한 작업실을 말하며, 각각의 시설은 분리 또는 구획(칸막이·커튼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되어야 합니다. 다만, 제조공정의 자동화 또는 시설·제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분리 또는 구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각각의 시설이 서로 구분(선·줄 등으로 구분하는 경우를 말함)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작업장의 바닥·내벽 및 천장 등은 다음과 같은 구조로 설비되어야 합니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내수처리를 해야 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해야 합니다.

√ 내벽은 바닥으로부터 1.5미터까지 밝은색의 내수성으로 설비하거나 세균방지용 페인트로 도색해야 합니다. 다만, 물을 사용하지 않고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작업장의 내부 구조물, 벽, 바닥, 천장, 출입문, 창문 등은 내구성, 내부식성 등을 가지고, 세척·소독이 용이해야

합니다.

- 작업장 안에서 발생하는 악취·유해가스·매연·증기 등을 환기시키기에 충분한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작업장은 외부의 오염물질이나 해충, 설치류, 빗물 등의 유입을 차단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 작업장은 폐기물·폐수 처리시설과 격리된 장소에 설치해야 합니다.

식품취급시설 등(「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2호다목)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데 필요한 기계·기구류 등 식품취급시설은 식품의 특성에 따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다목).

▪ 식품취급시설 중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은 위생적인 내수성재질[스테인레스·알루미늄·강화플라스틱(FRP)·테프론 등 물을 흡수하지 않는 것을 말함]로서 씻기 쉬운 것이거나 위생적인 목재로서 씻는 것이 가능한 것이어야 하며, 열탕·증기·살균제 등으로 소독·살균이 가능한 것이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다목).

▪ 냉동·냉장시설 및 가열처리시설에는 온도계 또는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설치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다목).

급수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2호라목)

▪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라목).

▪ 지하수 등을 사용하는 경우 취수원은 화장실·폐기물처리시설·동물사육장 그 밖에 지하수가 오염될 우려가 있는 장소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 위치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라목).

▪ 먹기에 적합하지 않은 용수는 교차 또는 합류되지 않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제1호라목).

※ 다만, 인근에 수돗물이나 「먹는물관리법」 제5조에 따른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등을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매시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2호마목)

▪ 식품을 위생적으로 유지·보관할 수 있는 진열·판매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다만, 신고관청은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영업자가 제조·가공하는 식품의 형태 및 판매 방식 등을 고려해 진열·판매의 필요성 및 식품위생에의 위해성이 모두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진열·판매시설의 설치를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화장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2호바목)

▪ 화장실을 작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 정화조를 갖춘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합니다. 다만, 상·하수도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 수세식이 아닌 화장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변기의 뚜껑과 환기시설을 갖추어야 합니다.

▪ 공동화장실이 설치된 건물 안에 있는 업소 및 인근에 사용이 편리한 화장실이 있는 경우에는 따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또는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안에서 이동판매형태의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2호사목).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가 지역 농·수·축산물을 주재료로 이용한 식품을 제조·판매·가공하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2호사목).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최·주관 또는 후원하는 지역행사 등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2호사목).

▪ 그 밖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별도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 그 시설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및 별표 14 제2호사목).

시설기준 위반 시 제재

시설 개수명령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자에게 시설을 개수(改修)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제1항).

※ 이에 따른 명령에 위반한 자는 1차 위반시 200만원(2차 300만원, 3차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8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처목).

▪ 건축물의 소유자와 영업자가 다른 경우 건축물의 소유자는 시설 개수명령을 받은 영업자가 시설을 개수하는 데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74조제2항).

영업정지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영업시설이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에 맞지 않은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6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0호).

그 밖의 처분

▪ 「식품위생법」 제36조에 따른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4호).

2.2.3.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옥외광고물 등의 설치

옥외광고물 설치과정

① 옥외광고물의 금지 여부 확인

1.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확인
2. 표시·설치가 금지되는 광고물 등의 형태와 내용 확인
3. 개별 법령에서의 광고물 등 제한 여부 확인(「의료법」, 「청소년 보호법」 등)

광고물 등의 표시·설치에 대한 제약이 없는 경우

↓

② 지역, 장소, 물건에 대한 제한 및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 광고물 등

관혼상제, 학교행사용, 정치활동 및 노동활동, 미아찾기, 교통사고 목격자 찾기, 선거 홍보 등의 목적에 사용되는 광고물 등(30일 이내)

또는

③ 허가 또는 신고 후 가능한 광고물 등

도시지역, 문화유산 및 보호구역, 도로·철도·공항·항만, 철도차량, 자동차, 항공기 등의 지역, 장소, 물건에 표시·설치하는 광고물 등

↙

④ 옥외광고심의원회의 심의(지방자치단체)

1. 광고물 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심의
2. 광고물 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심의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설치에 관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 심의

※ 시·군·구 조례에서 시·군·구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광고물 등만 해당함

→

⑤ 허가신청 또는 신고(지방자치단체)

1. 허가대상: 옥상간판, 애드벌룬,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선전탑, 아치광고물 등
2. 신고대상: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 허가 및 신고 수리의 기준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준수여부 및 표시기간 기준 등 확인

↓

⑥ 광고물 등의 표시 및 설치

1. 일반적 표시방법 준수(통행방해 금지, 형광도료·이동간판 금지 등)
2. 각 개별 광고별 표시 및 설치 기준에 맞게 표시·설치
3. 자율관리구역, 정비시범구역, 자유표시구역 여부 확인 -> 구역에 따라 별도의 표시방법 적용

↓

⑦ 안전검사 실시(대상 광고물 만 해당)

1. 광고물 등의 안전점검(표시·설치방법 준수 여부 점검)
2.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연 1회 이상 점검)

허가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허가 대상 광고물

▪ 허가를 받아 표시 또는 설치를 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 및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순번	구분	내용
1	벽면이용 간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이용 간판 √ 한 변의 길이가 10m 이상인 것 √ 건물의 4층 이상 층의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것으로서 타사광고(건물·토지·시설물·점포 등을 사용하고 있는 자와 관련이 없는 광고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물을 말함)를 표시하는 것
2	돌출간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은 제외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3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것
4	옥상간판	모든 옥상간판
5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이상인 것
6	애드벌룬	모든 애드벌룬
7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모든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지정벽보판 및 현수막 지정게시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8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	모든 교통시설 이용 광고물(지하도·철도역·도시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것은 제외)

9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다음의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광고물(아래 ①, ②, ④의 교통수단에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제5항제2호의 사항을 표시하는 것은 제외) ① 사업용 자동차 ② 사업용 화물자동차 ③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④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화물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소형·경형화물자동차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특수자동차로서 이동용 음식판매 용도인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 ⑤ 대여자전거
10	선전탑	모든 선전탑
11	아치광고물	모든 아치광고물
12	전기이용 광고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광고물 √ 네온류(유리관 내부에 수은·네온·아르곤 등의 기체를 집어넣어 문자 또는 모양을 나타내는 것을 말함) 광고물 또는 전광류[발광다이오드, 액정표시장치 등의 발광(發光) 장치를 이용한 것을 말함] 광고물 중 광원(光源)이 직접 노출되어 표시되는 광고물로서 광고내용의 변화를 주지 않는 광고물 √ 네온류 또는 전광류 등을 이용하여 동영상 등 광고내용을 평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 디지털홀로그램, 전자빔 등을 이용하여 광고내용을 공간적·입체적으로 수시로 변화하도록 한 디지털광고물

13	특정광고물	위에 해당하지 않는 광고물로서 옥외광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17호)

허가 대상 게시시설

▪ 허가를 받아 설치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

-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
-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

신고대상 광고물 및 게시시설

신고 대상 광고물

▪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광고물은 다음과 같습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순번	구분	내용
1	벽면 이용 간판 (위의 허가 대상 광고물 중 1.과 12.는 제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벽면 이용 간판 √ 면적이 5㎡ 이상인 것. 다만, 건물의 출입구 양 옆에 세로로 표시하는 것은 제외합니다. √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
2	공연간판	최초로 표시하는 공연간판을 제외한 공연간판

3	돌출간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돌출간판(「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2호) √ 의료기관·약국의 표지등("+" 또는 "약"을 표시하는 표지등을 말함) 또는 이용업소·미용업소의 표지등을 표시하는 것 √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5m 미만인 것 √ 한 면의 면적이 1㎡ 미만인 것
4	지주 이용 간판	윗부분까지의 높이가 지면으로부터 4m 미만인 지주 이용 간판
5	입간판	건물의 벽에 기대어 놓거나 지면에 세워두는 등 고정되지 않은 목재, 아크릴 또는 조례로 정하는 재료로 만들어진 게시시설에 문자·도형 등을 표시하는 광고물(「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6호의2))
6	현수막	가로등 현수기(懸垂旗)를 포함한 모든 현수막
7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사업용 자동차, 사업용 화물자동차, 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 음식판매자동자, 대여자전거(「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를 제외한 교통수단 이용 광고물

8	벽보	모든 벽보
9	전단	모든 전단

신고 대상 게시시설

▪ 신고를 하고 표시해야 하는 게시시설은 위의 신고대상 광고물을 설치하기 위한 게시시설로 합니다. 다만, 면적이 30㎡를 초과하는 현수막 게시시설은 제외합니다(「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2항).

> ※ 그 밖에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신고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옥외광고물 설치자』 콘텐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상호의 선정

상호의 선정
Q. 반찬가게 영업을 하기 위한 간판을 만들려고 합니다. 근처 유명한 반찬가게와 비슷한 상호를 사용하면 장사가 더 잘될 거 같은데, 이런 상호를 써도 될까요? A. 일반적으로 상호 선정은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상법」 제18조),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상법」 제23조제1항). 또한 널리 인식된 상호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로서(「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타인의 영업을 침해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

> ※ 상호 결정 및 상호권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음식점 창업』 <영업시설 등 설치-상호 선정 및 옥외광고물 설치-상호선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3. 창업지원

2.3.1. 반찬가게를 위한 창업지원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반찬가게 사업자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

-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가 다음의 기준에 해당할 것

√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 10명 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따라서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의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상시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외한 사람을 말합니다(「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3항).

·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에 따른 일용근로자

·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사람

· 「기업부설연구소등의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소상공인지원센터를 통한 창업교육 및 상담 등의 지원

▪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두고 있으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소상공인에 대한 균질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 및 제4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지역별로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업무의 수요를 고려하여 "지역별 소상공인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

▪ 지역별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는 소상공인과 관련한 다음의 업무를 수행합니다(「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

▹ 소상공인 창업과 경영개선을 위한 정보 제공, 교육 및 상담

▹ 지역상권의 조사·분석

▹ 소상공인 실태조사 및 관련 정보의 수집

▹ 그 밖에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에 대한 지원사업으로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그 밖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 반찬가게 사업자는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경영교육, 컨설팅 지원, 무료법률구조 지원 등 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인하여 반찬가게 창업에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소상공인 지원제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소상공인마당 자영업 지원 포털 홈페이지(https://www.sbiz.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영업신고 등

3.1. 영업신고 및 사업자등록

3.1.1. 영업신고

영업신고

반찬가게를 하려는 자는 관련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 이라 함)에게 영업신고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전단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신고의 절차

▪ 영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 영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서식)에 다음의 서류(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제10호 및 제11호).

- 교육이수증(「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 영업 신규신고 수수료는 28,000원입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가목).

▪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영업신고증(「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8항).

▪ 신고증을 발급한 신고관청은 영업신고 관리대장(「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3호서식)을 작성·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9항).

▪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해당 영업소의 시설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증 발급 후 15일 이내에 신고받은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0항 본문).

▪ 영업자가 신고증을 잃어버렸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신고증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재발급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서식)에 신고증(신고증이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신청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2조제11항).

※ 신고증 재발급 수수료는 5,300원입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마목).

영업신고의 제한 사유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이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기 위해 영업시설을 철거한 경우는 제외)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또는 제8조를 위반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가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려는 경우

3.1.2. 사업자등록 및 확정일자

사업자등록

사업자

▪ 반찬가게 영업자는 사업자에 해당하며,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호).

사업자등록 의무

▪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자 중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가 아닌 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는 사업자 단위로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제2항 및 제3항).

※ “사업자등록”이란 납세의무가 있는 사업자를 정부(세무관서)의 대장에 수록하는 것으로, 과세 관청이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 「소득세법」에 따라서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지만(「소득세법」 제168조제1항),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제168조제2항).

사업자등록의 강제

▪ 사업자가 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등록시킬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6항).

▪ 사업자가 사업개시일부터 20일(「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본문)까지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뺍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

사업자등록의 신청

▪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 신청 사유, 사업 개시 연월일 또는 사업장 설치 착수 연월일, 그 밖의 참고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신청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

- 다만, 사업자단위과세사업자로 등록을 신청하려는 사업자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 대해 위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

▪ 위의 사업자등록신청서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3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제3항).

구분	첨부서류
1. 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2. 사업장을 임차하거나 전차(轉借)한 경우	▪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을 전차한 경우: 전대차계약서 사본 및 임대인의 전차동의서(임대차계약서에 전차를 할 때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 없다는 특약이 있는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서 사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상가건물의 일부분만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4. 사업자 단위로 등록하려는 사업자	사업자 단위 과제 적용 사업장 외의 사업장에 대한 위의 서류 및 사업장 소재지·업태(業態)·종목 등이 적힌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의 종된 사업장 명세서(「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부표 2 또는 부표 3)

▪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이유로 사업의 신고 전에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는 법인 설립을 위한 사업자허가신청서 사본, 사업자등록신청서 사본, 사업신고서 사본 또는 사업계획서로 위 1.의 서류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 단서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휴업·폐업신고

▪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않게 될 때에는 지체 없이 다음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 포함)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 사업자의 인적사항
- 휴업 연월일 또는 폐업 연월일과 그 사유

▹ 그 밖의 참고사항

> ※ 사업자등록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국세정책/제도-사업자등록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위의 폐업신고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2항).

확정일자

"확정일자"란?

▪ "확정일자"란 관할 세무서장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상가건물(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건물)의 임대차계약서가 존재하였음을 인정한 날짜를 말합니다.

▪ 건물을 임차해서 반찬가게 영업을 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임차한 건물이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때 보증금을 우선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5조제2항 참조).

확정일자의 신청

▪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받으려는 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임대차의 목적이 상가건물의 일부분인 경우 확정일자 신청서와 함께 그 부분의 도면을 제출해야 합니다(「상가건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 제2조제1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 확정일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음식점 창업』 <점포 준비-점포 계약-임차인의 보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건강진단 및 식품위생교육

3.2.1. 영업자 등의 건강진단

영업자 및 종업원의 건강진단

건강진단 대상자 및 실시시기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화학적 합성품 또는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제외)을 채취·제조·가공·조리·저장·운반 또는 판매하는 일에 직접 종사하는 영업자 및 종업원(다만,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운반하거나 판매하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외)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본문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

▹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단서).

※ 이를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원(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사목).

▪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영업 시작 전 또는 영업에 종사하기 전에 미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9조제2항).

영업의 제한 등

▪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다음의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은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2항, 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0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결핵(비감염성인 경우 제외)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에 해당하는 감염병
- 피부병 또는 그 밖의 고름형성(화농성) 질환
- 후천성면역결핍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성매개감염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영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해당)

▪ 영업자는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위의 질병이 있는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합니다(「식품위생법」 제40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영업자는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3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아목).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종업원 수가 5명 이상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이상 위반	30만원	60만원	90만원
-종업원 수가 4명 이하인 경우 건강진단 대상자의 100분의 50 미만 위반	20만원	40만원	60만원
2. 건강진단 결과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사람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3.2.2.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은 미리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이하 “식품위생교육”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영업을 시작한 뒤에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 중 영업준비상 사전교육을 받기가 곤란하다고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영업신고를 한 후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매년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7조제2호).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 종업원은 1차 위반시 10만원(2차 20만원, 3차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자목).

-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 영업에 직접 종사하지 않거나 두 곳 이상의 장소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종업원 중에서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를 지정하여 영업자 대신 교육을 받게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3항 본문).

- 영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을 그 영업에 종사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5항).

※ 이를 위반하여 위생교육을 받지 않은 종업원을 영업에 종사시킨 영업자는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4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차목).

식품위생교육 방법

-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 또는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으로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본문).

  - 다만,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미리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은 집합교육으로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6항 단서).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교육을 받기 어려운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인 경우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감염병이 유행하여 국민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7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

  - 도서·벽지 등의 영업자 및 종업원의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교육교재를 배부하여 학습하도록 하는 방법(「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으로서 신고관청이 인정하는 경우만 해당)

  - 그 밖의 경우: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한 원격교육의 방법

> ※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의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교육기관

- 식품위생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은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 동업자조합 또는 한국식품산업협회로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8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1항).

※ 「식품 등 영업자 등에 대한 위생교육기관지정」에서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교육기관을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추출가공식품업중앙회, 한국식용유지고추가공업협회 및 한국떡류식품가공협회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은 식품위생, 개인위생, 식품위생시책, 식품의 품질관리 등으로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 식품위생교육전문기관의 운영과 식품위생교육의 내용에 관한 세부 사항은 「식품관련 영업자 등에 대한 식품위생교육규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1조제3항).

교육시간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려는 사람이 받아야 하는 식품위생교육 시간은 6시간 입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제3호).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와 종업원은 매년 3시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1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제1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

1.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2.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2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사람이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및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3.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에서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하려는 경우
4. 식품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식품첨가물제조업, 식품운반업, 식품소분·판매업, 식품보존업, 용기·포장류제조업, 식품접객업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하는 사람이 식품자동판매기영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그 업종을 함께 하려는 경우

※ 4.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1항에 따른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 식품위생교육 대상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휴업신고로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휴업한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6항).

교육교재

▪ 식품위생교육기관은 교육교재를 제작하여 교육대상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 식품위생교육기관은 위생교육을 수료한 사람에게 수료증을 발급하고, 교육 실시 결과를 교육 후 1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해당 연도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각각 보고해야 하며, 수료증 발급대장 등

교육에 관한 기록을 2년 이상 보관·관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3조제2항).

3.3. 세금

3.3.1.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의 신고

부가가치세의 신고

부가가치세의 납부

▪ 사업자나 재화를 수입하는 자로서 개인, 법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재단 또는 그 밖의 단체는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3조제1항).

※ “부가가치세”는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는 거래단계마다 이윤에 대하여 과세하는 간접세로서, 부가가치세의 납세자는 부가가치세를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과세기간

▪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1항).

- 제1기: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 제2기: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 다만, 간이과세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함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

▪ 직전 연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함. 이하 "공급대가"라 함)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를 “간이과세자”라 하고,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1억4백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를 “일반과세자”라고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1조제1항 본문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9조제1항)

> ※ 부가가치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부가가치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의 신고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반찬가게 사업자(종합소득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 포함)는 그 종합소득과세표준을 그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제70조제1항).

> ※ 소득세 신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www.nts.go.kr) 홈페이지"의 <국세신고안내-종합소득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준수사항

4.1. 영업자의 준수사항

4.1.1. 반찬가게 운영시 준수사항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준수사항

준수사항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17 제2호).

▹ 제조·가공한 식품을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에게 판매해서는 안 되며,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배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영업장 외의 장소에서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영업자나 그 종업원이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배달**하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우편 또는 택배 등의 방법으로 최종소비자에게 배달**하는 경우

▹ 손님이 보기 쉬운 곳에 가격표를 붙여야 하며, 가격표대로 요금을 받아야 합니다.

▹ 영업신고증을 업소 안에 보관해야 합니다.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받지 않은 작업장에서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2조제1항·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않은 축산물,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자가 도축·집유·가공·포장 또는 보관된 축산물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축산물 또는 실험 등의 용도로 사용한 동물은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생산한 원유(原乳)를 원료로 하여 제조·가공하는 경우로서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12조 및 별표 4 제1호에 따른 검사에서 적합으로 판정된 원유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포획한 야생동물은 이를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제조·가공·판매의 목적으로 운반·진열·보관하거나 이를 판매 또는 식품의 제조·가공에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해당 제품·식품 또는 그 원재료를 진열·보관할 때에는 폐기용 또는 교육용이라는 표시를 명확하게 해야 합니다.

▹ 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에서 다음의 검사를 받아 마시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물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업소가 같은 건물에서 같은 수원(水原)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업소에 대한 시험결과로 해당 업소에 대한 검사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 일부항목 검사: 1년마다(모든 항목 검사를 하는 연도의 경우는 제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상수도의 검사기준에 따른 검사(잔류염소검사를 제외). 다만, 시·도지사가 오염의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지정한 지역에서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를 해야 합니다.

√ 모든 항목 검사: 2년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른 먹는 물의 수질기준에 따른 검사

▹ 「식품위생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위해평가가 완료되기 전까지 일시적으로 금지된 식품등을 제조·가공·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 공유주방 운영업자와의 계약을 통해 공유주방을 사용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 영업자 간 원재료 및 제품을 공동으로 사용하지 말 것

  √ 위생관리책임자가 실시하는 위생교육을 매월 1시간 이상 받을 것

위반 시 처벌

▪ 위의 경우를 위반하면 영업자는 시정명령·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 제75조제1항제13호 및 제97조제6호).

> ※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II. 1. 제11호 나목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4.1.2.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식품 등의 표시 기준

즉석판매제조·가공 식품에 대한 표시의무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표시사항을 그 표시방법에 따라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2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호나목).

▪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함]·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

표시사항

일반 표시사항

▪ 식품 등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항·제2항).

1.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

-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 식품유형, 품목보고번호
- 성분명 및 함량
- 용기·포장의 재질
- 조사처리(照射處理) 표시

- 보관방법 또는 취급방법
- 식육(食肉)의 종류, 부위 명칭, 등급 및 도축장명
- 포장일자, 생산연월일 또는 산란일

2.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재질
-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 식품용이라는 단어 또는 식품용 기구를 나타내는 도안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공통)

▪ 식품 등에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는 원재료가 포함된 경우 그 원재료명을 표시해야 하며,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 대상 및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1호).

1. 알레르기 유발물질

- 알류(가금류만 해당), 우유, 메밀, 땅콩, 대두, 밀, 고등어, 게, 새우, 돼지고기, 복숭아, 토마토, 아황산류(이를 첨가하여 최종 제품에 이산화황이 1kg당 10㎎ 이상 함유된 경우만 해당), 호두, 닭고기, 쇠고기, 오징어, 조개류(굴, 전복, 홍합 포함), 잣

2. 표시 대상

1) 위 1.의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2) 1)의 식품등으로부터 추출 등의 방법으로 얻은 성분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3) 1) 및 2)를 함유한 식품등을 원재료로 사용한 식품등

3. 표시방법

-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하고, 제품에 함유된 알레르기 유발물질의 양과 관계없이 원재료로 사용된 모든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단일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이나 포장육 및 수입 식육의 제품명이 알레르기 표시 대상 원재료명과 동일한 경우에는 알레르기 유발물질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예시) 달걀, 우유, 새우, 이산화황, 조개류(굴) 함유

▪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사용한 제품과 사용하지 않은 제품을 같은 제조 과정(작업자, 기구, 제조라인, 원재료보관 등 모든 제조과정 포함)을 통해 생산하여 불가피하게 혼입될 우려가 있는 경우 “이 제품은 알레르기 발생 가능성이 있는 메밀을 사용한 제품과 같은 제조 시설에서 제조하고 있습니다”, “메밀 혼입 가능성 있음”, “메밀 혼입 가능” 등의 주의사항 문구를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제품의 원재료가 알레르기 유발물질인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2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무 글루텐”의 표시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3호).

1.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을 원재료로 사용하지 않고 총 글루텐 함량이 1kg당 20㎎ 이하인 식품 등

2. 밀, 호밀, 보리, 귀리 또는 이들의 교배종에서 글루텐을 제거한 원재료를 사용하여 총 글루텐 함량이 1kg당 20㎎ 이하인 식품 등

▪ 식품 등에 고카페인을 함유된 경우에는 이를 표시해야 하며, 표시대상, 표시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 Ⅰ. 공통사항 제4호).

1. 표시대상

▹ 1㎖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액체 식품등

▹ 과라나를 원재료로 사용한 1g당 0.15㎎ 이상의 카페인을 함유한 고체 식품등

2. 표시방법

▹ 주표시면(식품등의 표시면 중 상표 또는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자가 식품등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보이는 면을 말함)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문구를 표시할 것

1) 액체 식품등: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

2) 고체 식품등: "고카페인 함유" 및 "총카페인 함량 000㎎" 또는 "제품의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 000㎎"(카페인 함량 분석이 어려운 품목은 사용한 원재료의 카페인 함량을 기준으로 표시할 수 있음)

▹ "어린이, 임산부 및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섭취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등의 문구를 표시할 것

3.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의 허용오차: 실제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은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 및 1회 섭취량당 카페인 함량의 90% 이상 110% 이하의 범위에 있을 것(다만, 커피, 다류(茶類) 또는 커피·다류를 원료로 한 액체 식품등의 경우에는 주표시면에 표시된 총카페인 함량의 120% 미만의 범위에 있어야 함)

소비자 안전을 위한 표시사항(식품 등의 주의사항 표시)

▪ 식품 등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을 다음과 같이 표시해야 합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 및 별표 2 Ⅱ. 식품등의 주의사항 표시).

대상	표시방법

식품, 축산물	√ 냉동제품에는 “이미 냉동되었으니 해동 후 다시 냉동하지 마십시오” 등의 표시(다만,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준 및 규격이 고시된 빙과류 중 빙과, 아이스크림류 또는 얼음류는 제외) √ 과일·채소류 음료, 우유류 등 개봉 후 부패·변질될 우려가 높은 제품에는 "개봉 후 냉장보관하거나 빨리 드시기 바랍니다” 등의 표시 √ “음주전후, 숙취해소” 등의 표시를 하는 제품에는 "과다한 음주는 건강을 해칩니다” 등의 표시 √ 아스파탐(aspatame, 감미료)을 첨가 사용한 제품에는 "페닐알라닌 함유”라는 내용의 표시 √ 당알코올류(락티톨, 만니톨, D-말티톨, D-소비톨, 에리스리톨, 이소말트, 자일리톨, 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 등을 말함)를 10% 이상(폴리글리시톨액, 말티톨액, D-소비톨액의 경우에는 말티톨과 소비톨의 실제 함량 기준을 말함) 함유한 제품에는 "당알코올" 표시, 괄호로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 표시 및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당알코올 함유 제품으로 과량 섭취 시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등의 표시 √ 별도 포장하여 넣은 신선도 유지제에는 "습기방지제”, "습기제거제” 등 소비자가 그 용도를 쉽게 알 수 있게 표시하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등의 주의문구도 함께 표시. 다만, 정보표시면(용기·포장의 표시면 중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게 표시사항을 모아서 표시하는 면을 말함) 등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선도 유지제에 직접 표시할 수 있음 √ 식품 및 축산물에 대한 불만이나 소비자의 피해가 있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부정·불량식품 신고는 국번없이 1399” 등의 표시 √ 보존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질소가스 등을 충전한 경우에는 “질소가스 충전” 등으로 그 사실의 표시 √ 원터치캔(한 번 조작으로 열리는 캔) 통조림 제품에는 "캔 절단 부분이 날카로우므로 개봉, 보관 및 폐기 시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 아마씨(아마씨유는 제외)를 원재료로 사용한 제품에는 “아마씨를 섭취할 때에는 일일섭취량이 16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1회 섭취량은 4g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등의 표시
식품첨가물	√ 수산화암모늄, 초산, 빙초산, 염산, 황산,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 차아염소산나트륨, 차아염소산칼슘, 액체 질소, 액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아산화질소, 아질산나트륨에는 “어린이 등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십시오”, “직접 먹거나 마시지 마십시오”, “눈·피부에 닿거나 마실 경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습니다” 등의 취급상 주의문구를 표시
기구 또는 용기·포장	√ 식품포장용 랩을 사용할 때에는 100℃를 초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만 사용하도록 표시 √ 식품포장용 랩은 지방성분이 많은 식품 및 주류에는 직접 접촉되지 않게 사용하도록 표시 √ 유리제 가열조리용 기구에는 "표시된 사용 용도 외에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하고, 가열조리용이 아닌 유리제 기구에는 "가열조리용으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등을 표시

식품 등의 표시방법

표시방법

▪ 식품 등에 대한 글씨크기·표시장소 등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표 3).

1.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품의 최소 판매단위별 용기·포장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사항을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포장된 과자류 중 캔디류·추잉껌, 초콜릿류 및 잼류는 최소 판매단위 제품의 가장 넓은 면 면적이 30㎠ 이하이고, 여러 개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이 하나의 용기·포장으로 진열·판매될 수 있도록 포장된 경우에는 그 용기·포장에 대신 표시 할 수 있습니다.

2. 한글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한자나 외국어를 병기하거나 혼용하여 표시할 수 있으며, 한자나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의 글씨크기와 같거나 한글의 글씨크기보다 작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가. 한자나 외국어를 한글 글씨보다 크게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경우(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에 표시하는 한자 또는 외국어의 글씨크기는 한글과 같거나 작게 표시해야 함)

   2) 「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상표 및 주류의 제품명의 경우

   나. 한글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라 자사에서 제조·가공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식품 등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항을 영어 또는 수출국의 언어로 표시한 경우

   2)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6호 및 제8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원료 및 제품으로 수입하는 식품등(「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에 따른 관광 사업용으로 수입하는 식품등은 제외)의 경우

   3) 수입축산물 중 지육(枝肉: 머리, 꼬리, 발 및 내장 등을 제거한 몸체), 우지(쇠기름), 돈지(돼지기름) 등 표시가 불가능한 벌크(판매단위로 포장되지 않고, 선박의 탱크, 초대형 상자 등에 대용량으로 담긴 상태를 말함) 상태의 축산물의 경우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2호가목3)에 따른 연구·조사에 사용하는 수입식품등의 경우

3.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바탕색의 색상과 대비되는 색상을 사용하여 주표시면 및 정보표시면을 구분해서 표시해야 합니다.

4. 표시를 할 때에는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 또는 소인(燒印: 열에 달구어 찍는 도장) 등을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원료용 제품 또는 용기·포장의 특성상 잉크·각인 또는 소인 등이 어려운 경우 등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할 수 있습니다.

5. 글씨크기는 10포인트 이상으로 해야 합니다. 영양성분에 관한 세부 사항이나 식육의 합격 표시를 하는 경우 또는 달걀껍데기에 표시하거나 정보표시면이 부족하여 표시하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따릅니다.

6. 위 5.에 따른 글씨는 정보표시면에 글자 비율(장평) 90% 이상, 글자 간격(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글자 비율 50% 이상, 글자 간격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7. 위 5. 및 6.에도 불구하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표시사항의 정보를 바코드 등을 이용하여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식품등의 경우 해당 식품등에 표시할 사항의 글씨크기는 12포인트 이상, 글자

비율(장평)은 정보표시면 면적의 크기와 상관없이 90%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표시면이 부족하여 해당 글씨크기 및 글자 비율(장평)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8. 표시를 할 때에는 각각의 글씨가 겹쳐지지 않도록 하고, 도안·사진 등으로 글씨가 가려지지 않도록 하여 가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 ※ 그 밖에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2.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의무

4.2.1. 위생적 취급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일반적 기준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

▪ 누구든지 판매(판매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제공 포함. 이하 같음)를 목적으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小分)·운반 또는 진열을 할 때에는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해야 하며, 영업에 사용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다루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

위생적 취급 기준

▪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의 위생적인 취급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3조제3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1).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는 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지 않도록 위생적으로 취급해야 합니다.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는 항상 청결하게 관리해야 합니다.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은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해야 합니다.

▹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하고, 이 경우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은 항상 정상적으로 작동시켜야 합니다.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은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하는 등 개인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없도록 포장되고, 제품의 용기·포장에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적합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말함)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허가를 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다만, 컵라면, 일회용 다류, 그 밖의 음식류에 뜨거운 물을 부어주거나 호빵 등을 따뜻하게 데워 판매하기 위해 분할하는 경우는 제외함).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는 사용 후에 세척·살균하는 등 항상 청결하게 유지·관리해야 하며,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는 각각 구분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해서는 안 됩니다.

위반 시 제재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별표 2 제2호가목,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00조 및 별표 27 제1호).

위반행위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이상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할 때에이물이 혼입되거나 병원성 미생물 등으로 오염되는 등 위생적으로 취급하지 않은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를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식품 등을 취급하는 원료보관실·제조가공실·조리실·포장실 등의 내부에 설치류, 위생해충을 방제(防除) 및 구제(驅除)하지 않아 설치류, 위생해충 및 그 배설물 등이 발견된 경우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식품 등의 원료 및 제품 중 부패·변질이 되기 쉬운 것을 냉동·냉장시설에 보관·관리하지 않은 경우	30만원	60만원	90만원
√ 식품 등의 보관·운반·진열 시에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이 정하고 있는 보존 및 유통기준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지 않거나 냉동·냉장시설 및 운반시설을 정상적으로 작동시키지 않은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 또는 포장에 직접 종사하는 사람에게 위생모 및 마스크를 착용시키지 않은 경우	20만원	40만원	60만원
√ 제조·가공(수입품 포함)하여 최소판매 단위로 포장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영업허가 또는 신고하지 않고 판매의 목적으로 포장을 뜯어 분할하여 판매한 경우	20만원	40만원	60만원
√ 식품 등의 제조·가공·조리에 직접 사용되는 기계·기구 및 음식기를 사용한 후에 세척 또는 살균을 하지 않는 등 청결하게 유지·관리하지 않은 경우 또는 어류·육류·채소류를 취급하는 칼·도마를 각각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 소비기한이 경과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한 경우(「식품위생법」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영업자는 제외)	30만원	60만원	90만원

▪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에 관한 기준에 맞지 않게 영업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시정명령을 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71조제1항).

4.2.2. 금지행위 및 처벌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

- 썩거나 상하거나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 또는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것은 제외함)
- 병(病)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添加)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심사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심사에서 식용(食用)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
-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것

위반 시 처벌

▪ 이를 위반하면 다음과 같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영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 폐쇄처분을 받거나(「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호),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1호).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썩거나 상하여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설익어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는 것이나 그러할 염려가 있는 것 또는 병을 일으키는 미생물에 오염되었거나 그러할 염려가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불결하거나 다른 물질이 섞이거나 첨가된 것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	영업정지 1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식품위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평가 대상인 농·축·수산물 등 가운데 안전성 평가를 받지 않았거나 안전성 평가에서 식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것(식용 외의 용도로 수입된 것을 식용으로 사용한 것 포함)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소분 대상이 아닌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소분·판매하는 것 포함)한 것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정지 3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판매 등이 금지되는 질병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질병에 걸렸거나 걸렸을 염려가 있는 동물이나 그 질병에 걸려 죽은 동물의 고기·뼈·젖·장기 또는 혈액을 식품으로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 또는 운반하거나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5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제1호다목에 따라 도축이 금지되는 가축전염병

▹ 리스테리아병·살모넬라병·파스튜렐라병·선모충증

위반 시 처벌

▪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영업소가 폐쇄되거나(「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2호),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금지되는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행위

▪ 누구든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위생법」 제57조에 따른 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식품위생법」 제6조).

▹ 기준·규격이 정해지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인 첨가물과 이를 함유한 물질을 식품첨가물로 사용하는 행위

▹ 위에 따른 식품첨가물이 함유된 식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행위

> ※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규격에 관한 사항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영업소가 폐쇄되거나(「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3호),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유독기구 등의 사용금지

유독기구 등의 사용금지

▪ 유독·유해물질이 들어 있거나 묻어 있어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과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직접 닿으면 해로운 영향을 끼쳐 인체의 건강을 해칠 우려가 있는 기구 및 용기·포장을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8조).

> ※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은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위반 시 처벌

▪ 이를 위반하면 해당 제품은 폐기되고(「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영업소의 폐쇄, 영업정지처분을 받거나(「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5호), 과징금을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82조제1항 및 제83조제1항제2호).

※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지나지 않은 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포함)는 폐쇄명령을 받은 영업과 같은 종류의 영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8조제2항제5호).

4.2.3. 위해식품 등의 회수

위해식품 등의 회수

위해식품 등의 회수 의무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4조(위해식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5조(병든 동물 고기 등의 판매 등 금지), 제6조(기준·규격이 고시되지 않은 화학적 합성품 등의 판매 등 금지), 제7조제4항(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8조(유독기구 등의 판매·사용 금지), 제9조제4항(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 및 규격), 제12조의2제2항(유전자재조합식품등의 표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표시의 기준) 또는 제8조제1항(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유통 중인 해당 식품 등을 회수하거나 회수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전단,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2항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5조).

※ 이를 위반하여 회수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처분을 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2호).

▪ 다만, 해당 식품등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입한 식품등이고, 보고의무자가 해당 식품등을 수입한 자인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단서).

▪ 회수대상 식품 등의 기준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8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8조제1항).

위해식품 등의 회수계획 및 절차 등

▪ 회수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

- 제품명, 제조연월일, 소비기한
- 회수계획량(위해식품 등으로 판명 당시 해당 식품 등의 소비량 및 소비기한 등을 고려하여 산출해야 함)
- 회수 사유
- 회수방법
- 회수기간 및 예상 소요기간
- 회수되는 식품 등의 폐기 등 처리방법
- 회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 신고관청은 영업자로부터 회수계획을 보고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다음에 따른 조치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회수계획을 통보할 것. 이 경우 신고관청이 시장·군수·구청장인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함

- 「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에 따라 해당 영업자에게 회수계획의 공표를 명할 것
- 유통 중인 해당 회수 식품 등에 대해 해당 위반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실시할 것

▪ 회수계획을 보고한 영업자는 해당 위해식품 등을 회수하고, 그 회수결과를 지체 없이 신고관청에 보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회수결과 보고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

- 식품 등의 제조·가공량,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실적
- 미회수량에 대한 조치계획
-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위해식품 등을 회수한 영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감면

▪ 위해식품 등의 회수에 필요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한 영업자는 해당 식품 등으로 인해 받게 되는 「식품위생법」 제75조 또는 제76조에 따른 행정처분을 다음에 따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45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1조).

- 「식품위생법」 제45조제1항 후단의 회수계획에 따른 회수계획량의 4/5 이상을 회수한 경우: 그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면제
- 회수계획량의 1/3 이상을 회수한 경우: 「식품위생법」 제75조제4항 및 제76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소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3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 회수계획량의 1/4 이상 1/3 미만을 회수한 경우: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장 폐쇄인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이상 6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처분, 행정처분기준이 영업정지 또는 품목·품목류의 제조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1/2 이하의 범위에서 경감

영업정치처분을 받은 경우의 행정쟁송
Q. 반찬가게를 운영하다가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되었는데 너무 억울합니다.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A. 행정처분을 받은 반찬가게 영업자는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해서 취소 또는 변경을 요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구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이 사이트(www.easylaw.go.kr)의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등

식품 등의 이물 발견보고 의무

▪ 판매의 목적으로 식품 등을 제조·가공·소분·수입 또는 판매하는 영업자는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식품의 제조·가공·조리·유통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사용된 원료 또는 재료가 아닌 것으로서 섭취할 때 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섭취하기에 부적합한 물질[이하 “이물(異物)”이라 함]을 발견한 사실을 신고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이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의 신고를 접수하고 이를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이물의

발견을 거짓으로 신고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식품위생법」 제98조 제2호 및 제3호), 소비자로부터 이물 발견신고를 받고 전부 보고하지 않은 자는 300만원(2회 위반시 4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500만원), 이물 발견신고의 보고를 지체한 자는 100만원(2회 위반시 2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101조제2항제5호의2,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7조 및 별표 2 제2호러목).

이물 보고의 대상 등

▪ 영업자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이물(異物)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제5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1항).

- 금속성 이물, 유리조각 등 섭취과정에서 인체에 직접적인 위해나 손상을 줄 수 있는 재질 또는 크기의 물질
- 기생충 및 그 알, 동물의 사체 등 섭취과정에서 혐오감을 줄 수 있는 물질
- 그 밖에 「보고 대상 이물의 범위와 조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물질

▪ 이물의 발견 사실을 보고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서식의 이물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에 사진, 해당 식품 등 증거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제2항).

식품등의 오염사고 보고 등

식품등의 오염사고 보고 의무

▪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식품등의 제조·가공 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이하 "산업재해"라 함)로 인해 식품등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등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식품등의 폐기, 시설 개선 또는 세척 등 오염 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이하 "오염예방조치"라 함)를 취하고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46조의2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

- 산업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이물이 섞이거나 섞일 우려가 있는 경우
- 산업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가스·분진·화학물질 등을 원인으로 하여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

※ 이를 위반하여 오염사고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영업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14호의3,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2호의2 참조).

▪ 위에 따라 식품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가 취해야 하는 오염예방조치는 다음과 같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3항).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폐기(계획수립 포함)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32조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시설 또는 기계·기구 등에 대한 소독·교체 및 세척(계획수립 포함)
- 종업원 대상 오염예방조치와 관련된 안내 및 지도

※ 이를 위반하여 오염예방조치를 하지 않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6호의2).

식품등의 오염사고 보고 방법

▪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오염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1호의2서식의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오염사고보고서(전자문서로 된 보고서 포함)에 증거물 또는 이물 사진 등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0조의2제1항).

4.3. 식품위생검사

4.3.1. 식품위생검사의 실시 등

시험·검사기관의 검사

출입·검사·수거 등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함) 또는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식품 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해 필요하면 다음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2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12조).

- 영업자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의 제출 요구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소(사무소, 창고, 제조소, 저장소, 판매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장소 포함)에 출입하여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하는 검사
- 위 검사에 필요한 최소량의 식품 등의 무상 수거
-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영업에 관계되는 장부 또는 서류의 열람

※ 이를 위반하여 검사·출입·수거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2호).

▪ 출입·검사·수거 등은 국민의 보건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수시로 실시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

- 위에도 불구하고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은 업소에 대한 출입·검사·수거 등은 그 처분일부터 6개월 이내에 1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은 영업자가 그 처분의 이행 결과를 보고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에 따라 수거한 식품등에 대해서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1호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정하는 시험·검사기관에 검사를 의뢰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20조제4항 및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시험·검사기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시험·검사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할 다음의 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함)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및 별표3).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 농림축산검역본부
- 국세청 주류면허지원센터
- 「보건환경연구원법」 제2조에 따른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축산물에 대한 위생검사를 하기 위해 설립한 다음의 기관
  - √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
  - √ 경기도북부동물위생시험소
  - √ 강원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 √ 충청북도축산위생연구소
  - √ 충청남도동물위생시험소
  - √ 전북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 √ 전라남도동물위생시험소
  - √ 경상북도동물위생시험소
  - √ 경상남도동물위생시험소
  - √ 제주특별자치도동물위생시험소

자가품질검사 의무

자가품질검사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제조·가공하는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7조(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또는 제9조(기구 및 용기·포장)에 따른 기준과 규격에 맞는지를 검사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1조제1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영업자는 위의 검사를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1조제2항).

▪ 검사를 직접 행하는 영업자는 검사 결과 해당 식품 등이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제4항, 제8조 또는 제9조제4항을 위반하여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1조제3항).

자가품질검사기준 등

▪ 자가품질검사는 다음의 자가품질검사기준에 따라 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1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 및 별표 12).

- 식품 등에 대한 자가품질검사는 판매를 목적으로 제조·가공하는 품목별로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식품공전에서 정한 동일한 검사항목을 적용받은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경우에는 식품유형별로 이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기구 및 용기·포장의 경우 동일한 재질의 제품으로 크기나 형태가 다를 경우에는 재질별로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자가품질검사주기는 처음으로 제품을 제조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른 주문자상표부착식품등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자신의 제품을 만들기 위해 수입한 반가공 원료식품

및 용기·포장은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관할 세관장이 신고필증을 발급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자가품질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품유형별 검사항목을 검사합니다. 다만, 식품제조·가공 과정 중 특정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항목의 검사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 영업자가 다른 영업자에게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경우에는 식품 등을 제조하게 하는 자 또는 직접 그 식품 등을 제조하는 자가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 과자(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 빵류(크림을 위에 바르거나 안에 채워 넣은 후 가열살균하지 않고 그대로 섭취하는 것만 해당), 당류(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올리고당류만 해당), 식육함유가공품, 어육가공품류(연육, 어묵, 어육소시지 및 기타 어육가공품만 해당), 두부류 또는 묵류, 식용유지류(압착식용유만 해당), 특수용도식품, 소스, 음료류(커피, 과일·채소류음료, 탄산음료류, 두유류, 발효음료류, 인삼·홍삼음료, 기타음료만 해당), 동물성가공식품류(추출가공식품만 해당), 빙과류, 즉석섭취식품(도시락, 김밥류, 햄버거류 및 순대류만 해당), 즉석조리식품(순대류만 해당), 신선편의식품, 간편조리세트,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가공품, 식육가공품 및 알가공품 : 9개월마다 1회 이상 「식품등의 자가품질 검사항목 지정」 제3조에 따른 식품 및 축산물가공품 유형별 검사항목에 따라 실시합니다.

※ 다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5 제2호에 따른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는 2년간 보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1조제4항).

자가품질검사 위반 시 처분

▪ 자가품질검사 규정을 위반한 경우 다음과 같이 시정명령·해당 품목 제조정지 또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습니다(「식품위생법」 제71조, 제75조제1항제5호, 제76조제1항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9호).

위반사항	행정처분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로서	-	-	-
검사항목의 전부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품목류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이상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1개월	품목 제조정지 3개월
검사항목의 50퍼센트 미만에 대해 실시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	품목 제조정지 15일	품목 제조정지 3개월
자가품질검사에 관한 기록서를 2년간 보관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5일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자가품질검사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거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제2호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으로부터 부적합한 사실을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식품을 유통·판매한 경우	영업소 폐쇄와 해당 제품 폐기	-	-
자가품질검사 결과 부적합한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그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1개월	영업정지 2개월	영업정지 3개월

소비자의 위생검사 등 요청

위생검사의 요청 요건 및 절차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포함),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같은 영업소에 의해 같은 피해를 입은 5명 이상의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식품위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보건환경연구원이 식품 등 또는 영업시설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이하 “위생검사 등”이라 함)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1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제1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의2).

- 같은 소비자,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이 특정 영업자의 영업을 방해할 목적으로 같은 내용의 위생검사 등을 반복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기술 또는 시설, 재원(財源) 등의 사유로 위생검사 등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

▪ 위생검사 등을 요청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6서식의 소비자 위생검사등 요청서에 요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하되,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기본법」 제29조에

따른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검사기관의 장을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위생검사 등의 요청에 따르는 경우 14일 이내에 위생검사 등을 하고 그 결과를 소비자의 대표자, 소비자단체의 장 또는 시험·검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방법으로 하되,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문서로 위생검사 등의 요청을 한 소비자 또는 소비자단체 또는 시험·검사기관에 알리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16조제2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조제3항).

4.4. 원산지 표시의무

4.4.1.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농수산가공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대상

▪ 다음의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을 수입하는 자,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통신판매 포함)하는 자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보관·진열하는 자는 "① 농수산물 또는 ②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은 제외), ③ 농수산물 가공품(국내에서 가공한 가공품에 한정함)의 원료"에 대해서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제3조제1항).

1.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
2.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고한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다만,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에 따라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수입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은 제외)

▪ 위 ③의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에 대한 원산지 표시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물, 식품첨가물, 주정(酒精)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는 배합 비율의 순위와 표시대상에서 제외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항).

1. 원료 배합 비율에 따른 표시대상

가.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

나. 사용된 원료의 배합 비율에서 두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의 합이 98% 이상인 원료가 있는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

다. 위 가. 및 나. 외의 경우에는 배합 비율이 높은 순서의 3순위까지의 원료

라. 위 가.부터 다.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김치류 및 절임류(소금으로 절이는 절임류에 한정)의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원료

1) 김치류 중 고춧가루(고춧가루가 포함된 가공품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고춧가루 포함)를 사용하는 품목은 고춧가루 및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고춧가루 및 소금

2) 김치류 중 고춧가루를 사용하지 않는 품목은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

3) 절임류는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배합 비율이 가장 높은 순서의 2순위까지의 원료와 소금(다만, 소금을 제외한 원료 중 한 가지 원료의 배합 비율이 98% 이상인 경우에는 그 원료와 소금으로 함)

2. 위 1.에 따른 표시대상 원료로서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기준」에서 정한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3조의 기준에 따른 원료

▪ 위 규정을 적용할 때 원료(가공품의 원료 포함) 농수산물의 명칭을 제품명 또는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원료 농수산물이 위 규정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이 않더라도 그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본문)

√ 다만, 원료 농수산물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원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3항 단서).

①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2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②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당류를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당류가공품 포함)의 원료로 사용된 경우

③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라 원재료명 표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위의 표시대상이 아닌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원료에 대해서도 그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에 따른 표시기준과 표시방법을 준수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7항).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보는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한 것으로 봅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

1.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5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3조에 따른 표준규격품의 표시를 한 경우
2.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에 따른 우수관리인증의 표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4조에 따른 품질인증품의 표시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9조에 따른 우수천일염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3.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이력추적관리의 표시를 한 경우
4.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34조 또는 「소금산업 진흥법」 제38조에 따른 지리적표시를 한 경우
5. 「식품산업진흥법」 제22조의2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원산지인증의 표시를 한 경우
6. 「대외무역법」 제33조에 따라 수출입 농수산물이나 수출입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7. 다른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원산지 또는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한 경우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 제2호가목).

> ※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불복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사이트 『과태료 납부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의 표시기준 및 표시방법

원산지의 표시기준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 등에 대한 원산지 표시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제1항 및 별표 1).

1. 농수산물

가. 국산 농수산물

1) 국산 농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그 농산물을 생산·채취·사육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이하 "시·군·구"라 함)명을 표시합니다.

2) 국산 수산물: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합니다. 다만, 양식 수산물이나 연안정착성 수산물 또는 내수면 수산물의 경우에는 해당 수산물을 생산·채취·양식·포획한 지역의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원양산 수산물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원양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해외수역에서 어획하여 국내에 반입한 수산물은 "원양산"으로 표시하거나 "원양산" 표시와 함께 "태평양", "대서양", "인도양", "남극해", "북극해"의 해역명을 표시합니다.

2) 위 1)에 따른 표시 외에 연안국 법령에 따라 별도로 표시해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1)에 따른 표시와 함께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을 혼합한 농수산물

1) 국산 농수산물로서 그 생산 등을 한 지역이 각각 다른 동일 품목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지역까지의 시·도명 또는 시·군·구명과 그 혼합 비율을 표시하거나 "국산",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합니다.

2) 동일 품목의 국산 농수산물과 국산 외의 농수산물을 혼합한 경우에는 혼합비율이 높은 순서로 3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산지와 그 혼합비율을 표시합니다.

라. 2개 이상의 품목을 포장한 수산물: 서로 다른 2개 이상의 품목을 용기에 담아 포장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2개까지의 품목을 대상으로 위 가목2), 나목 및 아래 2.의 기준에 따라 표시합니다.

2.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가.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수입농수산물 등"이라 함)은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나.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반입한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이하 "반입농수산물 등"이라 함)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원산지를 표시합니다.

3. 농수산물 가공품(수입농수산물 등 또는 반입농수산물 등을 국내에서 가공한 것 포함)

가.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위 1. 및 2.의 기준에 따라 표시합니다.

나.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혼합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혼합 비율이 높은 순서로 2개 국가(지역, 해역 등)까지의 원료 원산지와 그 혼합 비율을 각각 표시합니다.

다.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어느 하나의 변경의 폭이 최대 15% 이하이면 종전의 원산지별 혼합 비율이 표시된 포장재를 혼합 비율이 변경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라. 사용된 원료(물, 식품첨가물, 주정 및 당류는 제외)의 원산지가 모두 국산일 경우에는 원산지를 일괄하여 "국산"이나

"국내산" 또는 "연근해산"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마. 원료의 수급 사정으로 인해 원료의 원산지 또는 혼합 비율이 자주 변경되는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요령」 제4조에 따라 원료의 원산지와 혼합 비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1) 특정 원료의 원산지나 혼합 비율이 최근 3년 이내에 연평균 3개국(회) 이상 변경되거나 최근 1년 동안에 3개국(회) 이상 변경된 경우와 최초 생산일부터 1년 이내에 3개국 이상 원산지 변경이 예상되는 신제품인 경우

2) 원산지가 다른 동일 원료를 사용하는 경우

3) 정부가 농수산물 가공품의 원료로 공급하는 수입쌀을 사용하는 경우

원산지의 표시방법

▪ 농수산물, 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 및 반입 농수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1).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표시합니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글자 크기

가) 포장 표면적이 3,000㎠ 이상인 경우: 20포인트 이상

나) 포장 표면적이 50㎠ 이상 3,000㎠ 미만인 경우: 12포인트 이상

다) 포장 표면적이 50㎠ 미만인 경우: 8포인트 이상. 다만, 8포인트 이상의 크기로 표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다른 표시사항의 글자 크기와 같은 크기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라) 가), 나) 및 다)의 포장 표면적은 포장재의 외형면적을 말함. 다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른 통조림·병조림 및 병제품에 라벨이 인쇄된 경우에는 그 라벨의 면적으로 합니다.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 또는 내용물의 색깔과 다른 색깔로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붙임딱지),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 또는 포장을 하지 않고 엮거나 묶은 상태인 경우에는 꼬리표, 안쪽 표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아래 3.의 경우는 제외)

1) 푯말, 안내표시판, 일괄 안내표시판,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등을 이용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다만, 원산지가 다른 동일 품목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의 원산지는 일괄 안내표시판에 표시하는 방법 외의 방법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가) 푯말: 가로 8cm × 세로 5cm × 높이 5cm 이상

나) 안내표시판

(1) 진열대: 가로 7cm × 세로 5cm 이상

(2) 판매장소: 가로 14cm × 세로 10cm 이상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7호가목에 따른 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령」 제21조제8호에 따른 식육즉석판매가공업의 영업자가 진열장에 진열하여 판매하는 식육에 대해 식육판매표지판을 이용하여 원산지를 표시하는 경우의 세부 표시방법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다) 일괄 안내표시판

(1) 위치: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설치해야 합니다.

(2) 크기: 나)(2)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하되, 글자 크기는 20포인트 이상으로 합니다.

라) 상품에 붙이는 스티커: 가로 3cm × 세로 2cm 이상 또는 직경 2.5cm 이상이어야 합니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원산지를 표시하는 글자(일괄 안내표시판의 글자는 제외)의 크기는 제품의 명칭 또는 가격을 표시한 글자 크기의 1/2 이상으로 하되, 최소 12포인트 이상으로 합니다.

3. 살아 있는 수산물의 경우

1) 보관시설(수족관, 활어차량 등)에 원산지별로 섞이지 않도록 구획(동일 어종의 경우만 해당)하고, 푯말 또는 안내표시판 등으로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표시합니다.

2) 글자 크기는 30포인트 이상으로 하되, 원산지가 같은 경우에는 일괄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문자는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농수산물 가공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제1호 및 별표 2).

1.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는 경우

1) 위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표시기준에 따른 원재료명 표시란에 추가하여 표시합니다. 다만, 원재료명 표시란에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하되, 구매시점에 소비자가 원산지를 알 수 있도록 표시해야 합니다.

2) 문자: 한글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 옆에 한문 또는 영문 등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3) 글자 크기

가) 10포인트 이상의 활자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부족한 경우에는 10포인트보다 작게 표시할 수 있으나,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원재료명의 표시와 동일한 크기로 진하게(굵게) 표시해야 합니다.

나) 가)에 따른 글씨는 각각 장평 9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다만, 정보표시면 면적이 100㎠ 미만인 경우에는 각각 장평 50% 이상, 자간 –5% 이상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4) 글자색: 포장재의 바탕색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다만, 포장재의 바탕색이 투명한 경우 내용물과 다른 단색으로 선명하게 표시합니다.

5) 그 밖의 사항

가) 포장재에 직접 인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워지지 않는 잉크·각인·소인 등을 사용하여 표시하거나 스티커, 전자저울에 의한 라벨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그물망 포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꼬리표, 안쪽 표지 등으로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않는 농수산물 가공품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맹사업자의 직영점과 가맹점에 제조·가공·조리를 목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 가맹사업자가 원산지 정보를 판매시점 정보관리(POS, Point of Sales) 시스템을 통해 이미 알고 있으면 포장재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2. 포장재에 원산지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위의 2.를 준용하여 표시합니다.

※ 그 밖에 통신판매의 경우 원산지 표시방법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 등의 비치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의 비치·보관 의무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31조나 「가축 및 축산물 이력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 등 다른 법률에 따라 발급받은 원산지 등이 기재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매입일부터 6개월간 비치·보관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 이를 위반해서 영수증이나 거래명세서 등을 비치·보관하지 않으면 1차 위반시 20만원(2차 40만원, 3차 80만원, 4차 이상 8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5호,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및 별표 2 제2호사목).

원산지 관련 거짓 표시 등의 금지

혼동 또는 위장표시의 금지

▪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사람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2항).

1.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행위

※ 원산지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5 제1호).

가. 원산지 표시란에는 원산지를 바르게 표시하였으나 포장재·푯말·홍보물 등 다른 곳에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는 표시 등을 말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欺罔)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1)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고 인근에 설치된 현수막 등에는 "우리 농산물만 취급", "국산만 취급", "국내산 한우만 취급" 등의 표시·광고를 한 경우

2)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 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포장재 앞면 등 소비자가 잘 보이는 위치에는 큰 글씨로 "국내생산", "경기특미" 등과 같이 국내 유명 특산물 생산지역명을 표시한 경우

3) 게시판 등에는 "국산 김치만 사용합니다"로 일괄 표시하고 원산지 표시란에는 외국 국가명을 표시하는 경우

4) 원산지 표시란에는 여러 국가명을 표시하고 실제로는 그 중 원료의 가격이 낮거나 소비자가 기피하는 국가산만을 판매하는 경우

2. 원산지를 위장하여 조리·판매·제공하거나, 조리하여 판매·제공할 목적으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변경하여 보관·진열하는 행위

※ 원산지 위장판매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별표 5 제2호).

가. 원산지 표시를 잘 보이지 않도록 하거나, 표시를 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사실과 다르게 원산지를 알리는 행위 등을 말합니다.

나. 위 가목에 따른 일반적인 예는 다음과 같으며 이와 유사한 사례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기망하여 판매하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1) 외국산과 국내산을 진열·판매하면서 외국 국가명 표시를 잘 보이지 않게 가리거나 대상 농수산물과 떨어진 위치에 표시하는 경우

2) 외국산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면서 원산지가 어디냐고 물을 때 국내산 또는 원양산이라고 대답하는 경우

3) 진열장에는 국내산만 원산지를 표시하여 진열하고, 판매 시에는 냉장고에서 원산지 표시가 안 된 외국산을 꺼내주는 경우

3. 원산지 표시를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에 원산지가 다른 동일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혼합하여 조리·판매·제공하는 행위

※ 2026년 10월 22일부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배달앱 등 통신판매중개업자는 입점업체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원산지 표시제도에 관한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배달앱 등을 통해 음식을 판매하는 영업자는 플랫폼에서 안내하는 원산지 표시제도 관련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반 시 제재

▪ 이를 위반해서 거짓 표시 등을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위의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이내에 다시 위의 금지 사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원산지 표시 등의 위반에 대한 처분 등

표시의 이행·변경 등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나 제6조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 다음의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처분은 아래 1.에 한정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1. 표시의 이행·변경·삭제 등 시정명령

2. 위반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의 판매 등 거래행위 금지

▪ 위의 처분을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처분의 공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관세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다음의 자가 2년 이내에 2회 이상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 표시 등에 따라 위의 처분이 확정된 경우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해야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본문).

▹ 원산지의 표시를 하도록 한 농수산물이나 그 가공품을 생산·가공하여 출하하거나 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하는 자

▹ 음식물을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자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나 해양수산부장관이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의 실효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처분과 관련된 사항을 공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2항 단서).

▪ 위에 따라 공표를 해야 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3항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3항).

▹ 위에 따른 처분 내용

▹ 해당 영업소의 명칭

▹ 농수산물의 명칭

▹ 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명칭

▹ 그 밖에 처분과 관련된 다음의 사항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실의 공표"라는 내용의 표제

√ 영업의 종류

√ 영업소의 주소(「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점포에 입점·판매한 경우 그 대규모점포의 명칭 및 주소 포함)

√ 농수산물 가공품의 명칭

√ 위반 내용

√ 처분권자 및 처분일

√ 위에 따른 처분을 받은 자가 입점하여 판매한 「방송법」 제9조제5항에 따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의 채널명 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홈페이지 주소

▪ 공표는 다음의 홈페이지에 합니다(「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4항 및 제5항).

1. 농림축산식품부
2. 해양수산부
3. 관세청
4.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5.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6.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함)
7. 한국소비자원
8. 포털서비스(다른 인터넷주소·정보 등의 검색과 전자우편·커뮤니티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함)를 제공하는 자로서 공표일이 속하는 연도의 전년도 말 기준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 이용자수가 1천만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5. 변경 · 폐업 등

5.1. 영업변경 · 폐업 및 영업승계

5.1.1. 영업변경 및 폐업 신고

변경·폐업 신고 사항

반찬가게를 운영하는 자가 영업신고 사항 중 변경사항이 있거나 폐업할 때에는 신고해야 합니다.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신고한 사항 중 다음의 사항을 변경하거나 폐업할 때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함)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26조).

- 영업자의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의 성명을 말함)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영업장의 면적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영업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89조 및 별표 23 II. 1. 제10호에 따라 시정명령·시설개수명령·영업정지 또는 영업소폐쇄 등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제7호).

▪ 폐업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제71조부터 제76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 제재처분기간과 그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인 기간(「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처분의 사전 통지 시점부터 처분이 확정되기 전까지의 기간을 말함)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8항).

변경신고의 방법

▪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서식)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후단,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및 제42조제1항).

1. 영업소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이 발행한 수질검사(시험)성적서(수돗물이 아닌 지하수 등을 먹는 물 또는 식품 등의 제조과정이나 식품의 조리·세척 등에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군사시설 또는 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 해당 도시철도사업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영업을 하는 경우만 해당)
2. 건물 외부에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기 위해 영업장 면적을 변경하려는 경우: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을 하는 자가 즉석판매제조·가공 대상 식품 중 식품의 유형을 달리하여 새로운 식품을 제조·가공하려는 경우(변경 전 식품의 유형 또는 변경하려는 식품의 유형이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해당): 제조·가공하려는 식품의 유형 및 제조방법설명서

※ 영업변경신고의 수수료는 9,300원(소재지 변경은 26,500원)입니다(「식품위생법」 제92조제5호,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7조제1항 및 별표 26 제1호).

폐업신고의 방법

▪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2호서식의 영업의 폐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에 영업신고증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1항).

▪ 위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폐업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신고관청은 함께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 포함)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2항).

▪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봅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4조제3항).

직권말소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신고관청은 영업자(영업신고를 한 자만 해당)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37조제7항).

5.1.2. 영업승계의 신고

영업승계의 신고

영업승계의 사유

▪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1항).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 시설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가 한 신고는 그 효력을 잃습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2항).

-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 그 밖에 위의 절차에 준하는 절차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

▪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 이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품위생법」 제97조제1호).

▪ 영업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하려는 자는 영업자지위승계 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9호서식

)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39조제3항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1항).

- 영업신고증
- 영업자 지위 승계를 증명할 수 있는 다음의 서류
  - √ 양도의 경우: 양도·양수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 상속의 경우: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
  - √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식품위생법」 제41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경우: 교육이수증
- 양수인이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위임한 경우: 위임인의 자필서명이 있는 위임인의 신분증명서 사본 및 위임장

※ 신청인이 신고관청의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건강진단결과서(건강진단 대상자의 경우) 또는 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상속의 경우)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

▪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는 자가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함께 신고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8조제5항).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Q. 반찬가게를 인수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 영업자가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아직 남은 줄 몰랐습니다. 새로 영업을 시작할 수 있을까요? A. 영업자가 영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제2항(허가취소 등) 또는 제76조제1항(품목 제조정지 등)를 위반한 사유로 종전의 영업자에게 행한 행정 제재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끝난 날부터 1년간 양수인에게 승계되며, 행정 제재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에는 양수인에 대해 행정 제재처분 절차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양수할 때에 그 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렇지 않습니다(「식품위생법」 제78조).